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길 ○○(○○동)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함)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인데, ○○○. ○○. ○○. ○○:○○경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세, ○), ○○○(○○세, ○)를 ○○원을 받고 이 사건 업소에 혼숙하게 한 행위로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개월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고, 20○○. ○○. ○○. 청문을 실시한 후 청구인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으로 변경 요청을 수용하여 20○○. ○○. ○○. 영업정지○개월 갈음 과징금 ○○○만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영업자로서 종업원 관리를 잘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면서 재발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

청구인은 ○○ ○○ ○ 장남으로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숙박업으로 가

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 ○.경 ○○○○까지 당하여 ○○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현실적으로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좌절하지 않고 사소한 범규도 위반하지 않으며 몸이 허락할 때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부과된 과징금의 감액을 간절히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의 ○○○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한 사실이 명백하고, 검찰청에서도 구약식(벌금○○○만원)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의 산정도 이 사건 업소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제공행위는 청소년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그 범규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오늘날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이 큰데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다면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청소년에게 탈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인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에 비추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광역시 ○○구 ○○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20○○. ○○. ○○. ○○○○경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세, ○), ○○○(○○세, ○)를 ○○원을 받고 혼숙하게 한 행위로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은 20○○. ○○. ○○.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위반 청소년 이성 혼숙(1차)”를 처분원인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 ○○. ○○. 실시된 청문에 참석하여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변경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20○○.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개월 같은 과징금 ○○○만원을 부과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 ○○.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사. 한편, ○○○○. ○○. ○○. 이 사건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만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되었으며,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 (청소년보호법 위반, 벌금 ○○○만원)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 ○○. ○○:○○경 ○○ ○○○ ○○ ‘○○’ 에 ○○ ○(○○○, ○), ○○○(○○○, ○)를 손님으로 맞으면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원의 숙박비를 받고, 이성 혼숙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가)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8호에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의2 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II.개 별기준에서는 숙박업자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1]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1)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은 ○○○○. ○○. ○○. ○○:○○경 청소년 ○○○(○세, ○)와 ○○○(○세, ○)를 손님으로 맞으면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원의 숙박비를 받고 이성 혼숙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행위로 관할 경찰서에 적발되었으며, 관련 형사사건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되었고, 청구인도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달리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제출한 주장 및 입증자료를 보면 피청구인이 위반사실에 대해 사전통지, 청문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처분하였고, 이에 대해 달리 반하는 주장도 없으므로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처분 절차도 지켜졌다고 할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에게는 숙박업소 영업자로서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는 사회적 책임이 누구보다 요구되는 점,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이성을 혼숙하게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관련 업소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